

**환경부
보도자료**

- '05.12 배포
- 사진 없음
- 총 23쪽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김성동 과 장 조기석 사무관	전화 (메일)	02-2110-6792 cho3259@me.go.kr
----------------	--------------------	------------	----------------------------------



◆ , , 가

- 환경부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규모를 설정하기 위하여 (사)한국냄새환경학회의 연구사업과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참석한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악취배출시설 규모를 설정하였다.
 - 금번에 설정된 악취배출시설의 종류별 규모는 2006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산업계의 규제부담 경감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악취배출시설을 명료하게 구체화한 것이다.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주요 개정내용
 - 2006년 1월 1일 이후 적용될 악취배출시설의 대상범위에 설 탕 제조시설,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등을 추가하고
 - 종전에 환경부 고시에 위임한 악취배출시설의 종류별 규모를 이번 개정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료화하였음

□ 한편 환경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주도록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참고자료>

- 붙임 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신구문 대조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1월 1일 이후 적용될 악취배출시설의 대상범위에 설탕 제조시설,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등을 추가하고, 종전에 환경부 고시에 위임한 악취배출시설의 종류별 규모를 이 규칙에서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산업자원부·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5. 10. 14 ~ 11.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

악취배출시설	
시설 종류	시설규모의 기준
1. 축산시설	사육시설면적이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양 150㎡, 사슴 500㎡, 그 밖의 축산시설은 500㎡ 이상인 시설
2. 도축·고기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3.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또는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면적이 100㎡ 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다만, 어선에 설치된 시설을 제외한다.
4.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폐수발생량 5톤/일 이상의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5. 사료 제조시설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 또는 용적 5㎡ 이상의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공정을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사료 제조시설 나. 1일 생산능력 3톤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사료 제조시설
6.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승인 대상 사업장의 시설
7. 설탕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 또는 용적 5㎡ 이상의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공정을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8.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 또는 용적 5㎡ 이상의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공정을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장류의 경우 양조간장 시설에 한한다.
9. 그 밖의 식료품 제조시설	용적 5㎡ 이상의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공정을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10. 증류주·합성주 및 발효주 제조시설	용적 5㎡ 이상의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공정을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11.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 또는 용적 5㎡ 이상의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공정을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12. 담배 제조시설	용적 3㎡ 이상의 습점·건조 공정 또는 호제공정(회석·배분공정을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13. 제사 및 방직시설	용적 합계 2m ³ 이상의 세모·부잡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4. 직물 직조시설	용적 합계 1m ³ 이상의 호제·호배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5.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용적 합계 5m ³ 이상의 세모·표백·정련·자숙·염색·다림질(텐트)·탈수·건조 또는 염료조제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6.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 10m ³ 이상의 원피저장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 또는 용적 3m ³ 이상의 석회적,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7. 가죽 제조시설	가. 용적 10m ³ 이상의 원피저장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 또는 용적 3m ³ 이상의 석회적, 탈모, 탈회,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인조가죽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8. 신발 제조시설	로루·프레스 등 제조 작업장의 합계 면적이 330m ² 이상인 제조시설
19. 제재·목재가공 및 합판·강화목재 제조시설	가. 동력 20마력 이상의 목재 제재·가공연마 공정(다만, 방부처리 또는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한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과 일반제재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 3m ³ 이상의 도포·도장·도장 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 용적이 3m ³ 이상이거나 동력이 20마력 이상의 접합·성형 또는 접착 합판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라. 용적 10m ³ 이상의 목재방부·방충처리 또는 양생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0.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	가. 용적 3m ³ 이상의 합침·중해·표백·탈수 또는 탈묵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의 석회로 또는 가열(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21. 출판 및 인쇄관련 시설	작업장의 면적이 150m ² 이상인 시설로서 제판·인쇄·건조·코팅·압출·접착(접합) 또는 제책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2.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석유정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3.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5. 무기안료·염료·유연제, 그 밖의 착색제 제조 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화합물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6.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7.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8. 기초 의약품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 시설	가. 용적 1m ³ 이상의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나.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 1m ³ 이상의 연소(화학 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 또는 용적 5m ³ 이상의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공정을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29. 의약 제제품 제조시설	가·용적 1m ³ 이상의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나.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 1m ³ 이상의 연소(화학 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0.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시설	가. 용적 1m ³ 이상의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나.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 1m ³ 이상의 연소(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1.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 1m ³ 이상의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 1m ³ 이상의 연소(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2.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및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 1m ³ 이상의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 1m ³ 이상의 연소(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3. 화학섬유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섬유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5.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시간당 50톤 이상의 아스팔트제품(아스팔트, 아스팔트혼합물, 아스팔트 콘크리트, 역청물질 혼합제품 등)을 제조 또는 재생하는 시설
36. 금속의 용융·제련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과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7. 금속·금속제품·기계·장비·기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다만,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가. 용적 5m ³ 이상이거나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 및 피막 처리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나. 용적 1m ³ 이상의 도금, 열처리, 탈지, 산·알카리 처리, 화성처리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 3m ³ 이상의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라.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 1m ³ 이상의 주물사처리공정(코아 제조공정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38.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혼합·정련·절연·접합·피복·성형 공정을 포함한다)
39.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 1m ³ 이상의 용융·용해 또는 열분해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나. 폐플라스틱을 혼련·압축 또는 가압하여 펠렛이나 판상으로 가공하기 위한 동력 100마력 이상의 성형시설을 포함하는 생산시설
40. 산업용 세탁시설	작업장의 면적이 330m ² 이상인 산업용 세탁작업장
41.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에 한한다.
42. 폐수 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을 포함한다)
43. 하수·축산폐수 처리시설	가.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폐수·분뇨·오수 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44.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 다만, 폐지·고철·폐석고·폐석회·폐내화물·폐유리 등 무기성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재활용자의 폐기물처리 및 보관시설과 폐기물배출자의 보관시설을 제외한다.
45. 그 밖의 시설	위 제1호 내지 제44호의 “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 중 월 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 측정결과 모두 별표 3 제1호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란의 “기타지역” 또는 동표 제2호의 “기타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도지사가 고시하는 시설

비 고

1. 위 표에 규정된 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사무실·창고·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위 표에 규정된 시설규모의 기준 미만의 공정 또는 시설로서 동일사업장에 2개 이상의 동종 공정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공정 또는 시설의 총규모가 당해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정 또는 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저장공정이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관련)					
1.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2006년 1월 1일부터		2. 2006년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한국표준 산업분류	악취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시설 종류	시설규모의 기준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업의 시설				
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과 동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				
마.	「비료관리법」에 의한 부산물비료 생산시설				
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세탁업의 시설				
사.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수질 오염방지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아.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현행					개정(안)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관련)						
1.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2006년 1월 1일부터		2. 2006년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한국표준산업분류	악취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시설 종류	시설규모의 기준
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동차수리업(9221)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업(90)						
9011 하수처리업						
9021 폐기물 수집운반업						
9023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9030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						
	1	012	축산시설 (사육시설면적이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양 150㎡, 사슴 500㎡, 기타 축산시설은 500㎡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축산시설	사육시설면적이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양 150㎡, 사슴 500㎡, 그 밖의 축산시설은 500㎡ 이상인 시설
음·식료품 제조업(15)						
1511 도축, 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2	1511	도축, 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규모의 시설에 한함	2. 도축·고기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151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3	151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3.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또는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면적이 100㎡ 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다만, 여선에 설치된 시설을 제외한다.
1513 과일,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514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4	1514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4.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폐수발생량 5톤/일 이상의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현행				개정(안)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관련)					
1.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2006년 1월 1일부터		2. 2006년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한국표준 산업분류	악취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시설 종류	시설규모의 기준
1520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시설		
1531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1532			전분 및 전분제품제조시설		
1533	5	1533	사료제조시설	5. 사료 제조시설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 또는 용적 5m ³ 이상의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공정을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사료 제조시설 나. 1일 생산능력 3톤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사료 제조시설
1541	6	1541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6.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승인 대상 사업장의 시설
1542			설탕제조시설	7. 설탕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 또는 용적 5m ³ 이상의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공정을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1543			코코아 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시설		
1544			국수, 라면 및 유사식품 제조시설		
1545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8.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 또는 용적 5m ³ 이상의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공정을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장류의 경우 양조간장 시설에 한한다.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규모의 시설에 한함

현행				개정(안)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관련)					
1.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2006년 1월 1일부터		2. 2006년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한국표준 산업분류	악취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시설 종류	시설규모의 기준
1549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	7	1549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규모의 시설에 한함	9. 그 밖의 식료품 제조 시설 용적 5m ³ 이상의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공정을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1551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시설	8	1551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시설		10. 증류주·합성주 및 발효주 제조시설 용적 5m ³ 이상의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공정을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1552 발효주 제조시설					
1553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11. 맥아 및 맥주 제조 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 또는 용적 5m ³ 이상의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공정을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1554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담배제조업(16)	9	1600	담배제조시설		12. 담배 제조시설 용적 3m ³ 이상의 습점·건조 공정 또는 호제공정(회석·배분공정을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제사 및 방직업(171)	10	1710	제사 및 방직시설		13. 제사 및 방직시설 용적 합계 2m ³ 이상의 세모·부잠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1	1720	직물 직조시설		14. 직물 직조시설 용적 합계 1m ³ 이상의 호제·호배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2	1740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15.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용적 합계 5m ³ 이상의 세모·표백·정련·자숙·염색·다림질(텐트)·탈수·건조 또는 염료조제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현행				개정(안)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관련)					
1.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2006년 1월 1일부터		2. 2006년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한국표준 산업분류	악취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시설 종류	시설규모의 기준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82)	13	1820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16.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 10m ³ 이상의 원피저장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 또는 용적 3m ³ 이상의 석회적,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가죽제조업(191)	14	1910	가죽제조시설	17. 가죽 제조시설	가. 용적 10m ³ 이상의 원피저장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 또는 용적 3m ³ 이상의 석회적, 탈모, 탈회,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인조가죽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신발제조업(193)	15	1930	신발제조시설	18. 신발 제조시설	로루·프레스 등 제조 작업장의 합계 면적이 330m ² 이상인 제조시설
제재 및 목재 가공업(201)	16	2010	제재 및 목재 가공시설	19. 제재·목재가공 및 합판·강화목재 제조시설	가. 동력 20마력 이상의 목재 제재·가공연마 공정(다만, 방부처리 또는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한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과 일반제재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 3m ³ 이상의 도포·도장·도장 마무리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 용적이 3m ³ 이상이거나 동력이 20마력 이상의 접합·성형 또는 접착합판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라. 용적 10m ³ 이상의 목재방부·방충처리 또는 양생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규모의 시설에 한함

현행				개정(안)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관련)					
1.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2006년 1월 1일부터		2. 2006년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한국표준 산업분류	악취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시설 종류	시설규모의 기준
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211)				20.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	가. 용적 3m ³ 이상의 합침·증해·표백·탈 수 또는 탈묵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의 석회 로 또는 가열(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제 조시설
2111 펄프제조시설	17	2111	펄프제조시설		
2112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	18	2112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		
출판업(221)	19	221	출판시설	21. 출판 및 인쇄관련 시설	작업장의 면적이 150m ² 이상인 시설로 서 제판·인쇄·건조·코팅·압출·접착 (접합) 또는 제책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 다.
2211 서적출판업					
2212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2213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2219 기타출판업					
인쇄 및 인쇄 관련 산업(222)					
2221 인쇄시설	20	2221	인쇄시설		
2222 인쇄관련 시설	21	2222	인쇄관련 시설		
코르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231)	22	2310	코르크스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		

환경부 장
관이 고시
하는 규모
의 시설에
한함

현행					개정(안)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관련)						
1.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2006년 1월 1일부터			2. 2006년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한국표준 산업분류	악취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시설 종류	시설규모의 기준
석유정제품 제조업(232)	23	232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규모의 시설에 한함	22.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석유정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321 원유정제처리업						
2322 석유정제물 처리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2411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4	2411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3.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412 기초 무기화합물제조시설	25	2412	기초 무기화합물제조시설		2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413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6	2413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5. 무기안료·염료·유연제, 그 밖의 착색제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화합물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41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7	241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6.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41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8	241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7.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현행					개정(안)	
[별표 2] 약취배출시설(제3조관련)						
1.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2006년 1월 1일부터			2. 2006년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한국표준 산업분류	약취배출시설		약취배출시설	
					시설 종류	시설규모의 기준
2421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시설	29	2421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시설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규모의 시설에 한함	28.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시설	가. 용적 1m ³ 이상의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중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나.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 1m ³ 이상의 연소(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 또는 용적 5m ³ 이상의 증기(혼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중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공정(진공냉동 건조공정을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2422 의약 제제품 제조시설	30	2422	의약 제제품 제조시설		29. 의약 제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 1m ³ 이상의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중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나.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 1m ³ 이상의 연소(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42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시설						
2431 살충제 및 기타농약 제조시설	31	2431	살충제 및 기타농약 제조시설		30.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시설	가· 용적 1m ³ 이상의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중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나.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 1m ³ 이상의 연소(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현행				개정(안)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관련)					
1.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2006년 1월 1일부터		2. 2006년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한국표준 산업분류	악취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시설 종류	시설규모의 기준
2432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32	2432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31.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 1m ³ 이상의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 1m ³ 이상의 연소(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433	비누,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시설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규모의 시설에 한함	32.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및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 1m ³ 이상의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 1m ³ 이상의 연소(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434	기록용 매체 및 관련화학제품 제조시설				
2439	그 외 기타 화학제품제조시설				
2440	화학섬유 제조시설	33	2440	화학섬유 제조시설	33. 화학섬유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섬유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현행				개정(안)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관련)					
1.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2006년 1월 1일부터		2. 2006년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한국표준 산업분류	악취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시설 종류	시설규모의 기준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5)					
2511	34	2511	고무타이어 및 튜브 생산시설	3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519	35	2519	기타 고무제품 제조시설		
2521			제1차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25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523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5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529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6)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규모의 시설에 한함	
2611			1차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2612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시설		
2619			기타 유리제품 제조시설		
2621			일반 도자기 제조시설		
2622			내화 요업제품 제조시설		
2623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시설		
263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시설		
2632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제품 제조시설		
2691			석제품 제조시설		

현행				개정(안)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관련)					
1.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2006년 1월 1일부터		2. 2006년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한국표준 산업분류	악취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시설 종류	시설규모의 기준
2692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36	2692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35.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시간당 50톤 이상의 아스팔트제품(아스팔트, 아스팔트혼합물, 아스팔트 콘크리트, 역청물질 혼합제품 등)을 제조 또는 재생하는 시설
269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제1차 금속산업(27)	37	27	제1차 금속시설	36. 금속의 용융·제련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과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71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712 철강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13 철강판 제조업					
2719 기타 철강사업					
2721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 합금 제조업					
2722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9 기타 제1차 비철금속산업					
2731 철강주조업					
2731 비철금속 주조업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규모의 시설에 한함

현행				개정(안)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관련)						
1.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2006년 1월 1일부터		2. 2006년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한국표준 산업분류	악취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시설 종류	시설규모의 기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을 포함하는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도장시설, 표면처리시설,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을 가진 사업장에 한한다)				37. 금속·금속제품·기계·장비·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다만,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가. 용적 5m ³ 이상이거나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 및 피막 처리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나. 용적 1m ³ 이상의 도금, 열처리, 탈지, 산·알카리 처리, 화성처리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 3m ³ 이상의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라.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 1m ³ 이상의 주물사처리공정(코아 제조공정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28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시설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규모의 시설에 한함			
2812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용기 제조시설						
2813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시설						
2891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시설						
2892 도금시설	38	28922			도금시설	
28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시설						
2894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철선조립제품 제조시설						
289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						
2911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2 펌프 및 압축기제조업						
291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5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6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 장비 제조업						
2917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9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1 전자용용 및 금속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현행				개정(안)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관련)					
1.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2006년 1월 1일부터		2. 2006년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한국표준 산업분류	악취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시설 종류	시설규모의 기준
2931 농업용 기계 제조업					
2932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제조업					
2933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2934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2935 섬유, 의복 및 가죽생산용 기계제조업					
2936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3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4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951 기타 가정용 기구 제조업					
2952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39	31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에 한함	38.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혼합·정련·절연·접합·피복·성형 공정을 포함한다)
가구 및 기타 제조업(36)	40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시설		
3611 매트리스 및 내장가구 제조업					
3612 목재가구 제조업					
3619 기타 가구제조업					
3691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3692 약기제조업					
369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현행				개정(안)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관련)					
1.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2006년 1월 1일부터		2. 2006년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한국표준 산업분류	악취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시설 종류	시설규모의 기준
369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695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696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697 모조장신·장식용품 및 교사용 모형 제조업					
3699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의 시설(37)	41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규모의 시설에 한함	39.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 1m ³ 이상의 용융·용해 또는 열분해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나. 페플라스틱을 혼련·압축 또는 가압하여 펠렛이나 판상으로 가공하기 위한 동력 100마력 이상의 성형시설을 포함하는 생산시설
3710 재사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					
3720 재사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42	93911	산업용 세탁업		40. 산업용 세탁시설 작업장의 면적이 330m ² 이상인 산업용 세탁작업장
	43	공통시설	도장시설		

현행				개정(안)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관련)					
1.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2006년 1월 1일부터		2. 2006년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한국표준 산업분류	악취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시설 종류	시설규모의 기준
44	기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41.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에 한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을 포함한다)	42. 폐수 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을 포함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43. 하수·축산폐수 처리시설	가.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폐수·분뇨·오수 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	44.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 다만, 폐지·고철·폐석고·폐석회·폐내화물·폐유리 등 무기성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재활용자의 폐기물처리 및 보관시설과 폐기물배출자의 보관시설을 제외한다.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45. 그 밖의 시설	위 제1호 내지 제44호의 “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 중 월 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 측정결과 모두 별표 3 제1호 배출허용기준(회석배수)란의 “기타지역” 또는 동표 제2호의 “기타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시설

현행		개정(안)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관련)		
1.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2006년 1월 1일부터	2. 2006년 1월 1일부터
<p>비고</p> <p>1. 제재 및 목재 가공업의 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일반제재업(20101)을 제외한다</p> <p>2. 출판업의 시설은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p> <p>3. 악취배출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제외한다.</p>	<p>비고</p> <p>1.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대상사업자에 한한다.</p> <p>2. 제재 및 목재 가공업의 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일반제재업(20101)을 제외한다</p> <p>3. 출판업의 시설은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p> <p>4. 악취배출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제외한다.</p>	<p>비고</p> <p>1. 위 표에 규정된 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제외한다.</p> <p>2. 사무실·창고·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3. 위 표에 규정된 시설규모의 기준 미만의 공정 또는 시설로서 동일사업장에 2개 이상의 동종 공정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공정 또는 시설의 총규모가 당해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정 또는 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저장공정이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